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38

2020년 12월 16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이상훈 의원 외 15명

나. 제 출 일 : 2020년 10월 16일

다. 회 부 일 : 2020년 10월 26일

라. 상 정 일 :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1월 30일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훈 의원)

가.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마을활력소 사업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합리적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의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분리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마을배움터”를, 신설된 제18조에는 “마을활력소”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마을배움터의 운영목적을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로 정하고, 위탁운영 대상을 ‘민간’에서 ‘법인·단체’로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 기존 마을활력소 운영방식은 시장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안 제18조제2항) 및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항(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규정함.

○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공익성을 규정함(안 제18조제5항).

○ 운영주체의 사업 중단 등에 대한 사업비의 환수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대한 주민 참여와 활동보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0. 10. 29. ~ 11. 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마을활력소 사업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합리적인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가.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 규정 분리(안 제17조제1항)

○ 안 제17조제1항은 현행 조례(제17조제1항)에서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의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분리하여 안 제17조에 “마을배움터”를, 안 제18조를 신설하여 “마을활력소를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마을배움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를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삭 제>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	<삭 제>

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 안 제17조제1항은 “마을배움터”의 운영목적을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로 정하고, 위탁운영 대상은 현행조례 제10조제3항[1]과 같이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자 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1개의 “마을배움터”를 조성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

○ 시설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307.36㎡)

○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31-6(우이동 170-10)

○ 공간구성(안) : 마을학교, 청소년 대안학교(주말학교), 청년 직업체험 카페, 다목적홀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 ③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조성된 “마을활력소”는 58개이고, 구체적인 조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서울시가 직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2개소임.

※ 서울시 직영 운영은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1개소이고, 민간위탁으로 성미산 마을회관 1개소가 있음.

□ 일반(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37개소)

연번	연도	자치구	행정동	공간명	소재지/사업대상지	소요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1	2015	서대문	천연동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독립문로10길 6	320	운영중('17.3월 개소)
2	2015	관악	삼성동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신림로 143	396	운영중('16.9월 개소)
3	2016	성북	길음1동	성북길나랑 학교마을활력소	길음로 144, 길음중학교	103	운영중('18.2월 개소)
4	2016	노원	상계1동	수락행복발전소	상계동 996-10,21	700	운영중('18.5월 개소)
5	2016	마포	성산1동	성미산 마을회관	성산동 250-23	2,772	운영중('18.7월 개소)
6	2016	양천	목2동	용왕산 숲속활력소	목2동 202-16, 용왕산근린공원 내	150	운영중('17.6월 개소)
7	2016	구로	천왕동	천왕역 버들마을활력소	오리로 지하 1130, 천왕역사 내	790	운영중('17.5월 개소)
8	2016	금천	시흥4동	새재미 마을활력소	독산로50길 105	250	운영중('17.3월 개소)
9	2016	영등포	대림2동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디지털로37나길 21, 3층	150	운영중('17.8월 개소)
10	2016	강동	성내2동	성내2동 마을활력소	성내동 43-17, 성내2동 경로당	1,500	운영중('18.10월 개소)
11	2017	성동	사근동	사근동 마을활력소	사근동길 72	430	운영중('19.2월 개소)
12	2017	동대문	회기동	회기한지붕 마을활력소	회기동 60-38, 舊 회기파출소	165	운영중('18.12월 개소)
13	2017	동대문	휘경1동	휘경동 마을활력소	휘경동 267-10, 지하보도	435	운영중('18.12월 개소)
14	2017	성북	종암동	문화공간 이육사	종암동 65-13	2,400	운영중('19.12월 개소)
15	2017	은평	역촌동	토정골사랑방	역촌동 219-33, 舊 역촌가압장	400	운영중('19.1월 개소)
16	2017	은평	진관동	한옥마을 활력소	연서로48길 74	180	운영중('19.12월 개소)
17	2017	구로	가리봉동	다붓다붓 마을활력소	가리봉동 131-49	420	운영중('18.11월 개소)
18	2017	금천	시흥5동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탑골로 22	2,000	운영중('18.6월 개소)
19	2017	동작	신대방2동	보라매둥지 마을활력소	여의대방로14길 41	603	운영중('18.12월 개소)
20	2018	중랑	상봉1동	마중	망우로55길 19, 2층	135	운영중('18.11월 개소)
21	2018	도봉	방학1동	마을활력소 산돌	방학동 697-15	1,900	조성중('21.1월 개소예정)

연번	연도	자치구	행정동	공간명	소재지/사업대상지	소요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22	2018	도봉	창2동	(가)시끌벅적 마을활력소	덕릉로89바길 21, 덕릉로57길 38-9	500	조성중('21.1월 개소예정)
23	2018	도봉	창5동	창오랑 마을활력소	창동 224-41	200	운영중('18.12월 개소)
24	2018	구로	가리봉동	가리봉동 자치회관	가리봉동 30-24	1,500	운영중('20.11월 개소)
25	2018	동작	사당2동	이수 마을활력소	동작대로 27가길 19	320	운영중('20.10월 개소)
26	2018	강동	명일2동	명일2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구천면로 502, 2층	50	운영중('18.9월 개소)
27	2020	중랑	면목3,8동	어울림마당 마을활력소	면목동 496-12	989	조성중
28	2020	중랑	면목5동	공동체주택 마을활력소	면목동 194-9	110	조성중
29	2020	도봉	도봉동	초록뜰 마을활력소	도봉로 181길 65-8	339	조성중
30	2020	노원	상계3,4동	상계3,4동 마을활력소	상계3,4동 68-50	289	조성중
31	2020	동작	대방동	개나리 마을활력소	대방동 504, 상가1층	193	조성중
32	2020	동작	사당3동	사당3동 마을활력소	사당동 141-100	800	조성중
33	2020	금천	시흥2동	시흥2동 마을활력소	시흥동 267-19	189	조성중
34	2020	강남	대치4동	대치동 마을활력소	대치동 901-78	200	조성중
35	2020	광진	구의2동	미정	구의2동 27-4	진행중	조성중
36	2020	성북	길음1동	미정	길음동 535-3외	168	조성중
37	2020	강서	가양1동	미정	양천로49길 80	310	조성중

☐ 일반(거점형) 마을활력소 (7개소)

연번	연도	자치구	행정동	공간명	소재지/사업대상지	소요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1	2018	송파	거여동	송파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거여동 187-42, 196-3,6, 36-14, 224, 43-9	2,693	설계중('21.12월 준공예정)
2	2018	강동	천호1동	천호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천호동 29-4,29-5	2,325	운영중('20.10월 개소)
3	2019	중랑	망우동	중랑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망우동 454-7	2,693	공사중('21.12월 준공예정)
4	2019	도ㅌ봉	쌍문2동	도봉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쌍문2동 85-38, 85-7	1,700	설계중('21.12월 준공예정)
5	2019	노원	중계4동	중계온마을센터	중계동 606-2	2,690	공사중('21.6월 준공예정)
6	2020	성북	종암동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종암동 62-13 외	진행중	부지매입중
7	2020	구로	개봉동	구로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개봉동 195-6	진행중	설계준비중

☐ 찾동 마을활력소 (14개소)

연번	연도	자치구	행정동	공간명	소재지/사업대상지	소요예산 (백만원)	진행상황
1	2015	성동	금호1가동	금호1가동 마을활력소	행당로 15	290	운영중('16.1월 개소)
2	2015	성북	동선동	동동마당	동소문로26길 27	220	운영중('16.1월 개소)
3	2015	도봉	방학3동	은행나루	시루봉로 94	300	운영중('16.2월 개소)
4	2015	금천	독산4동	독산4동 마을활력소	독산로 232	250	운영중('15.12월 개소)
5	2016	성동	마장동	함께보고	마장로42길 11	272	운영중('17.5월 개소)
6	2016	도봉	방학1동	학둥지	방학로2길 27	272	운영중('17.7월 개소)
7	2016	금천	독산1동	독산1동 마을활력소(맹글맹글)	시흥대로123길 11	256	운영중('17.1월 개소)
8	2017	은평	갈현1동	고리마루	갈현로 301	220	운영중('18.6월 개소)
9	2017	서대문	북가좌1동	나비울 마을활력소	수색로 100-55, 북가좌1동 주민센터 1층, 4층	220	운영중('18.6월 개소)
10	2017	영등포	문래동	문래목화	도림로141가길 16	235	운영중('18.7월 개소)
11	2017	동작	대방동	대방누리마루	여의대방로44길 20	320	운영중('18.6월 개소)
12	2018	광진	중곡4동	고랑울림	긴고랑로 131	300	운영중('19.7월 개소)
13	2018	강북	번3동	어울향기	한천로105길 21	300	운영중('19.12월 개소)
14	2019	중구	다산동	다산마루	동호로15길 50	200	'20.7월 시범운영중

○ 다만, "마을배움"과 "마을활력"의 공간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각각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마을 공간인 "마을활력소"에서 마을의 돌봄, 배움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조성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마을배움터

급속한 사회변화와 왜곡된 교육현실에 따라 경쟁 및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청소년, 청년 및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 마을 안에서 보듬고 소통을 통한 건전한 성장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임.

*** 마을배움터 기능(「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7조제2항)**

-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마을활력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 권역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임.

*** 마을활력소 기능(「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7조제3항)**

-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마을활력소 설치·운영(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마을배움터”와 함께 시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마을활력소”를 현실에 맞게 ① 시 직영(안 제18조제1항), ② 민간위탁(안 제18조제1항), ③ 보조사업(안 제18조제2항), ④ 공간의 사용·수익허가(안 제18조제3항)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설하는 규정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⑤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는 "마을활력소"를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의 이동>	⑥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과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과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동안 “마을활력소(’15년~’18년)”는 행정주도로 시의 예산과 자치구의 공간을 민간에 지원하여 민간이 운영해 왔으나, 공간운영주체의 역량이 높은 곳에는 적합한 공간이 없거나, 공간이 있어도 이를 운영할 주민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등, 공간과 주민 단체간 불일치로 인해 조성 및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시 직영과 민간위탁방식으로만 운영되던 “마을활력소”를 주민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공간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동역량은 높으나, 활동공간이 아쉬운 지역주민단체에 시 유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보조금 지원을 통한 공간 리모델링 등 개별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 조례안에는 "마을활력소" 운영방식을 ① 시 직영(안 제18조제1항), ② 민간위탁(안 제18조제1항), ③ 보조사업(안 제18조제2항), ④ 공간의 사용·수익허가(안 제18조제3항)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으나,

-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동 사업의 정당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경상 및 자본 보조금'으로 자치구의 마을활력소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미흡하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음에도 자치구 마을활력소의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

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자치구의 부담의무) 구청장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2021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7천5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0-2021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242,480	(x-) 242,480	(x-) 175,522	(x-) △66,958	(x-) △28
자치단체자본보조	(x-) 4,725,000	(x-) 4,825,000	(x-) 1,020,000	(x-) △3,805,000	(x-) △79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 5,000,000원*24개소 = 120,000천원	○ 마을활력소 사업비 지원 4,000,000원*26개소 = 104,000천원
	○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비 지원 44,480,000원*1개소 = 44,480천원	○ 거점형 마을활력소 운영비 지원 40,480,000원*1개소*0.5년 = 20,240천원
	○ 자치구 마을공동체 공감워크숍 운영 지원 66,000,000원 = 66,000천원	○ 자치구 마을공동체 공감워크숍 운영 지원 39,150,000원 = 39,150천원
	○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공공요금 12,000,000원 = 12,000천원	○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공공요금 12,132,000원 = 12,132천원
	증감사유	
	대상 마을활력소 준공시점을 고려한 지원액 편성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자치구 지원 500,000,000원*1개소 = 500,000천원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자치구 지원 = 1,000,0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 자치구 지원 = 4,205,000천원 - 공간 신축비 지원 800,000,000원*1개소 = 800,000천원 - 공간 리모델링비 지원 200,000,000원*5개소 = 1,000,000천원 - 공간 물품구입비 지원 50,000,000원*6개소 = 300,000천원 - 동작 대방동 개나리 마을활력소 조성 193,000,000원 = 193,000천원 - 노원 상계3동 마을활력소 조성 289,000,000원 = 289,000천원 - 양천 용왕산 근린공원 마을활력소 조성 95,000,000원 = 95,000천원 - 중랑 사가정역 어울림마당 마을활력소 조성 989,000,000원 = 989,000천원 - 도봉 초록뜰 마을활력소 조성 339,000,000원 = 339,000천원 - 금천 시흥2동 도서관 테라스 마을활력소 조성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천연옹달샘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비 지원 20,000,000원*1개소 = 20,000천원	- 구로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비(2차) 200,000,000원*1개소 = 200,000천원 - 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비(2차) 800,000,000원*1개소 = 800,000천원 ○ 천연옹달샘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비 지원 20,000,000원*1개소 = 20,000천원
	증감사유	
	○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개소 증가(1개소→2개소) ○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 신규 추진 사항 없음	

○ 안 제18조제1항은 현행 제17조제1항에서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의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분리하여, 안 제18조제1항을 신설하여 “마을활력소”의 시 직영 및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18조제2항은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활력소에 컨설팅 등의 간접지원과 공간의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음. ‘사업비 지원’은 공간조성비(시설비)를 기본으로 하며, 개관이후 주민주도의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연간사업비도 포함(마을활력소당 최장 5년, 연 최대 5백만원)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②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신설하는 조항이라고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보조금 사업의 경우 1년의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바,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88-89면 참조.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지방보조금 예산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

- 적용대상* : 운수업계 보조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산정기준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총한도액)

× (1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한도액 산정에서 제외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 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름**

- 또한,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모든 마을활력소 운영 사업을 지원 할 것인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활력소 운영을 지원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 제13조(지원신청)와 제13조의2(지원사업 선정)와 같은 조항의 신설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3조(지원신청)**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1항의 지원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5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지원사업 선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18조제3항은 “마을활력소” 운영 공간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마을활력소”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 이는 2019년 도입된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공간과 같이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 주민단체의 역량이 높고,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행정재산(공유재산)에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주민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공의 마을활동운영에 적합한 주체로 선정된 단체에 마을활력소를 위한 공간사용을 허가해 주는 시스템을 말함.

〈 마을활력소 구분 〉

유 형	마을공동체형 (모두의공간)	자치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찾동 마을활력소
정 의	누구나 언제나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 공간	자치구에 있는 마을공간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공간	동주민센터 공간 일부를 주민과 행정이 함께 운영하는 공간
장기운영 방향	마을대표단체에서 운영 (마을자산으로 전환)	자치구 마을자치 협력 및 공론장 운영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운영주체	1차) 주민모임 2차) 마을대표단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1차) 마을계획단 2차) 주민자치회
운영방법	직영·민간위탁·임대 (주민자율운영)	민간위탁	직영·민간위탁 (주민자율운영)
공간규모	500㎡ 미만	500㎡이상	500㎡ 미만
공간구성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놀이터, 공유부엌, 스튜디오, 개방공간 등)	마을자치센터 사무실, 강당(교육용, 행사용), 개방공간 등	지역특성에 맞는 공간(놀이터, 공유부엌, 스튜디오, 개방공간 등)
공간 마련 방법	민간공간 매입/기부채납, 공유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운영주체 최종선정 : 4개소

○ **추진목적 : 누구나, 언제나,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활력소를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역량이 높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확산 도모**

○ **추진경과**

- 예비선정단체 공모 : '19.8.30.~9.25.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367호("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사업 참여자 모집)

- 서류·현장·종합심사(14개 단체 심사 → 1개 단체 탈락) : '19.10.1.~10.10.

· 예비선정 : 11개 단체(매입형(6), 리모델링형(5)) ※ **매입형 선도모델1(광진), 신축1(동작) 별도 추진**

- 연대모임 및 컨설팅 등 간접지원 : '19. 10. ~ '20. 4.
- 최종심사 : 매입형 3('20.5.26.), 리모델링형 4('20.5.28.)
- 시 공고 : '20. 6. 1.(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670호)

〈 **최종선정** 〉

◆ 매입형 : 최종선정 2(건강한농부, 함께크는공동육아), 예비선정 1(도토리집공동육아)

◆ 리모델링형 : 조건부선정 2(길음예술사랑방, 종해문화진흥원)

○ **소요예산**

- 매입형*(시설비) : 5,000백만원 = 2,500백만원×2개소

* 단, 매입형은 '21년 본예산 확보 후 추진

- 리모델링형(자치단체자본보조) : 600백만원 = (시설비250백만원+자산취득비50백만원)×2개소

※ 2021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계획, 2020.7. 참조

〈 2021년 마을활력소 매입형 예산안 〉

○ **마을활력소 매입형 2개소(서초, 금천) 개요**

- 추진경과
  - '19. 8. 30.~9. 25. : 예비선정단체 공모
  - '19. 10. 1.~10. 10. : 심사·선정(매입형 6개 단체 예비선정)
  - '19. 10.~'20. 4. : 컨설팅 등 예비선정단체 간접지원
  - '20. 5. 26. : 최종심사(매입형 최종 2개 단체 선정)
- 대상지 개요

자치구	대표단체	위치(부지면적)	조성규모	소요예산
금천구	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농부	독산동 904-43 (245.3㎡)	지상1~3층 신축 (270.00㎡)	**2,500백만원** (매입비 1,551, 설계비 47, 공사비 891, 기타 11)
서초구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크는 공동육아	양재동 114-7 (176.4㎡)	지하1~지상2층 리모델링 (246.59㎡)	**2,500백만원** (매입비 2,127, 설계비 13, 공사비 344, 기타 16)

- 예산편성 내용

자치구	예산 비목	편성 내용	산출기초	예 산	비 고
총 계				4,100,000	
금천구	금천구 계			1,600,000	
	401-01 시설비	시설비 계		1,598,260	
		설계비	공사비X4.91%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46,800	
		매입비	감정평가액(산술평균)	1,548,960	
		수수료	등기이전비 등 기타 수수료	2,500	
	401-03 시설부대비	부대비	공사비X0.36% 이내	1,740	
서초구	서초구 계			2,500,000	
	401-01 시설비	시설비 계		2,493,440	
		공사비	연면적 246.59㎡X1,395천원 ※ 공공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 중 관련 리모델링 및 개·보수 사례 평균 적용	343,990	
		안전 진단비	모두의 공간 마을활력소 선도모델 안전진단비 수준	7,500	
		설계비	공사비X6.11%X60%(리모델링)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12,640	
		매입비	감정평가액(산술평균)	2,126,810	
		수수료	등기이전비 등 기타 수수료	2,500	
	401-02 감리비	감리비	공사비X1.53%X60%X(리모델링)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	5,280	
	401-03 시설부대비	부대비	공사비X0.36% 이내	1,280	

※ 금천구 공사비와 감리비는 추후 편성 예정

- 다만,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사용·수익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공용의 목적으로 조성된 "마을 활력소" 공간의 사용·수익허가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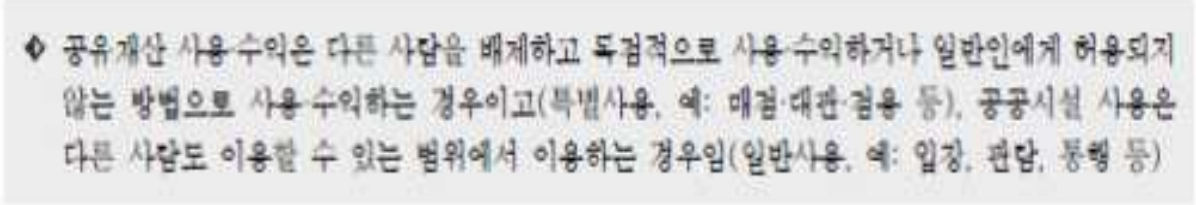
◆ 공유재산 사용·수익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이고(특별사용, 예: 매점·대관·점용 등), 공공시설 사용은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임(일반사용, 예: 입장, 관람, 통행 등)

※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 87면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안 제18조제4항은 “마을활력소” 공간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2]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3]인 경우에는, 사용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비영리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하고,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④ 제3항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18조제3항에서 “마을활력소” 공간의 사용·수익 허가로 공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마을활력소”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의 영리 행위까지 허가해 주면서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 질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8조제5항은 “마을활력소” 운영에 있어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익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⑤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는 "마을활력소"를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마을활력소”를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8조제3항과 제4항과 같이 공간을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영리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사업비의 환수 등(안 제18조의2)

○ 안 제18조의2제1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경우 등의 사업비 환수, 안 제2항은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취소·정지, 제한 등의 사항을 정하여, “마을활력소” 사업추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의2(사업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시설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9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38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상훈, 김제리, 이동현, 한기영, 김용석, 박순규, 박기열, 김화숙, 장상기, 이승미, 오한아, 이준형, 임만균, 송도호, 오현정, 임종국 의원 (16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마을공동체 공간을 지원해오고 있음.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마을활력소 사업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합리적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의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을 함께 규정하던 것을 분리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는 “마을배움터”를, 신설된 제18조에는 “마을활력소”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나. 마을배움터의 운영목적을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로 정하고, 위탁운영 대상을 ‘민간’에서 ‘법인·단체’로 규정함(안 제17조제1항).

다. 기존 마을활력소 운영방식은 시장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규정되어있었으나, 현실에 맞게 방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안 제18조 제2항) 및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항(안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을 규정함.

라.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공익성을 규정함(안 제18조제5항).

마. 운영주체의 사업 중단 등에 대한 사업비의 환수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바.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대한 주민 참여와 활동보장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삭제하고 조 제목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마을배움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를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요율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는 "마을활력소"를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⑥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과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과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의2(사업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또는 수익 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시설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9조(주민의 참여와 활동 보장) 시장은 제17조의 "마을배움터" 및 제18조의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마을배움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을배움 실천과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를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삭 제>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④ 시장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삭 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8조(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력소"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할 경우,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⑤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는 "마을활력소"를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 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과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과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8조의2(사업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마을활력소"의 설치·운영 지원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 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4. 허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시설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신 설>	제19조(주민의 참여와 활동 보장) 시장은 제17조의 "마을배움터" 및 제18조의 "마을활력소"를 설치·운

	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